

목 차

● 공 고

-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-647호 : 신청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 지정·공고 2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-647호

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 지정·공고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9-3호에 자동차관련시설(차고지) 설치 계획서가 신청되어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별표6 제12호 다목에 의거 주민열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21일
양 천 구 청 장

1. 차고 지정 개요

- 가) 구 분: 일반택시운송사업차고지 지정
- 나) 소 재 지: 신월동 559-3(대지면적 1,750.1㎡)
- 다) 용도지역: 제3종일반주거지역
- 라) 건물규모: 연면적: 6,582.24㎡, 지하3/지상9층
- 마) 차고지 지정내용: 지하1·2층(차고) 및 8층 일부(차고사무실)

2. 공고사유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지정·공고함

3. 공고장소: 구보, 구 홈페이지(www.yangcheon.go.kr)